

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South Korea's Ten-Year Experience with CISG and its Prospects

오원석**

Won-Suk Oh

〈목 차〉

- I. CISG의 발효와 적용
 - II. 한국의 CISG 판례
 - III. CISG가 한국 민법의 개정에 끼친 영향
 - IV. 전망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CISG의 10년 회고, CISG의 전망, 한국의 민·상법, 한국민법의 개정, 고등 및 대법원 판례

* 본고는 중재학회의 「2015 CISG 가입 10주년 기념 한중학술발표대회」에서 기초 발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wsosoh@yurim.skku.ac.kr)

I . CISG의 발효와 적용

1. CISG의 발효

193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한 통일법이 50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1980년 4월 11일에 UN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라 한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CISG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10개국 이상이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1986년 12월 11일에 미국과 중국, 이탈리아가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198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습니다.¹⁾ 따라서 올해는 CISG가 채택된 지 35주년이 되고, 발효한 지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CISG 체결국 수는 2015년 10월 1일 현재 83개국에 이르고 있는데,²⁾ CISG가 발효한 후 지금까지 매년 평균 3개국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결국의 면면을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이 모두 CISG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영국 제외)과 북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러시아, 호주가 CISG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아랍의 절반 정도의 국가가 아직 CISG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CISG는 외국중재판정의 국제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1958년 뉴욕협약(2015년 10월 1일 현재 156개국 가입)과 함께 UN이 제정한 여러 협약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물품무역량의 2/3 정도가 CISG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³⁾ CISG가 이러한 성공을 거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CISG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적절히 균형 잡힌 규칙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어느 국가나 지역의 법제에 특유한 법률용어나 법리에서 탈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⁴⁾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63번째 국가로 CISG에 가입하였고, 이에 CISG는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⁵⁾ 이에 올해는 우리나라가 CISG에

1) 이는 CISG 제99조 제1항에 따라 “... 10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 달의 初日에 발효”한 것이다.

2)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2015. 10. 1. 최종방문) 참조

3)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2 edition) (<<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digest-2012-e.pdf>> 에서 입수가능), p. ix.

4) Ibid.

5) CISG 제99조 제2항 참조. CISG가 이미 발효한 후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CISG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입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CISG이 발효한 지 16년 만에 63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무역규모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볼 때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CISG에 가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CISG 제4편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유보선언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⁶⁾

2. 한국에서 CISG의 법체계상 지위

우리나라에서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으로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CISG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함으로써 CISG는 더 이상의 국내적 입법조치가 없이도 그 자체로 법률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CISG는 자기집행조약(self-executing treaty)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CISG는 그 자체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적용되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이 CISG의 규정을 직접 원용할 수 있음도 물론입니다.

나아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의 국내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상법상의 규칙과 CISG상의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CISG가 우선합니다.

3. CISG의 적용

CISG는 당해 매매계약과 CISG 사이에 일정한 연결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CISG는 (i) 매도인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매도인국)와 매수인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매수인국)가 모두 계약국인 경우(CISG 제1조 제1항 제a호)나 (ii)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계약국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CISG 제1조 제1항 제b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전자를 직접적용이라 하고 후자를 간접적용이라 합니다.

(1) 직접적용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당사자와 외국의 어느 계약국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CISG 제1조 제1항 제a호를 통해 CISG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직접적용).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 외국의 계약국이 제95조유보국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CISG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매매계약이더라도 나아가 비록 CISG 소정의 여타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더라도, 법정지국이 비계약국인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이 영국(계약체결

6) 참고로 일본은 2008년 7월 1일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지)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인도장소(이행지)를 영국으로 약정하고 또한 준거법에 관하여 침묵하였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영국(법정지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 때, (또한, 편의상, 영국 국제사법 하에서 이러한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라고 가정한다면), 비계약국인 영국의 법원은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되는 영국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자국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뿐, 자국이 가입하지 않은 CISG를 당사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간접적용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당사자와 외국의 어느 비계약국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CISG 제1조 제1항 제b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당해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의 규칙이 어떠한지 여하에 따라 CISG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해 법정지국(우리나라 포함)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계약국(비유보국)의 법이 지정(‘주관적 연결’에 의한 지정과 ‘객관적 연결’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동 법정지국이 계약국이건 아니건 간에 그리고 제95조유보국이건 아니건 간에 CISG가 적용되지만(간접적용), 비계약국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용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을 경유한 후에 비로소 CISG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되나 다행히 이제 CISG 계약국의 수가 점증함에 따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약국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CISG의 직접적용은 더욱 늘게 되고 간접적용은 줄게 됩니다.

(3) CISG 적용범위 밖에 있는 사항

당해 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되더라도 계약의 유효성문제(예컨대,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계약체결과정에 착오·사기·강박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매매물품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 제조물책임문제 및 거래에서 서비스 부분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고 각각 그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국내법과 그 물권의 준거법이 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매매계약상 권리의 소멸시효의 문제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상계의 문제, 채권양도의 문제, 대리권의 문제 등도 CISG가 아닌 국내법에 의하게 됩니다.

II. 한국의 CISG 판례

1. 현황

공식통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CISG가 우리나라에서 발효한 후 2015년 6월까지 CISG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수(일심법원 기준)는 모두 39건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고등법원에 항소된 건수는 29건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그 중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6건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CISG에 관한 6건의 대법원판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1년 9월 기준으로 범세계적으로 보고되는 CISG 관련 판례는 2,500이 넘습니다.⁷⁾ 잘 아시듯이, UNCITRAL은 그 홈페이지에서 "Case Law on UNCITRAL Text"(CLOUT)를 통하여 CISG에 관한 각국의 법원판결과 중재판정을 수집하여 그 전문 또는 초록을 제공·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31건의 사건을 UNCITRAL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국가별로 보자면, 위의 39건 중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사건이 9건(홍콩을 포함하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 사이의 사건이 6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3건, 한국기업과 호주기업이 3건, 그 밖에 스페인, 덴마크, 캐나다, 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기업과의 사건이 각각 1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국가에 소재한 기업과의 사건이 적은 것은 아마도 사건의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고 동남아국가들이 CISG 체결국이 아니어서 CISG의 직접적용의 여지가 적은 것도 원인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CISG의 적용근거

위의 우리나라 판례들에서 CISG는 거의 모두 직접적용에 의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 국가가 CISG 체결국인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78117(본소) 및 2012나78124(반소) 판결⁸⁾은 "대한민국이 2004. 2.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7)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2012 Edition) <<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digest-2012-e.pdf>>, p. ix.

8) 그 1심판결은 각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가합7763(본소), 2011가합14464(반소) 판결이다.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계약국인 경우에 있어 영업소가 그 각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중국 역시 CISG의 계약국이므로 이 사건에는 본소와 반소 모두 CISG가 적용되고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준거법 합의에 따라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 상법 등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합의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⁹⁾·검역 등에 관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비하여 CISG가 간접적용된 것은 단지 다음 2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31258 판결⁹⁾은 “이 사건 각 계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인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ISG의 계약국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국인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되고,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¹⁰⁾에서도 “이 사건 계약은 타이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작물공급계약인데 타이완은 CISG의 계약국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국인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되고,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용이 부정된 사건도 1건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70290 판결에서 “원고 회사는 베트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베트남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베트남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9) 그 1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10가합67291 판결이다.

10) 그 1심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3940 판결이다.

3. CISG의 적용범위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CISG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 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¹¹⁾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2399 판결¹²⁾은 “이 사건 계약은 일용 아르헨티나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피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원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인데 아르헨티나국 역시 CISG의 체약국(1988. 1. 1. 발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CISG가 우선 적용되고,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데,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CISG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결하였습니다.

4. CISG의 적용배제

한편 매매계약이 CISG의 적용범위 내에 들더라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CISG의 적용배제가 가능합니다(이른바 opt-out). 물론 CISG의 적용배제를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CISG 체약국의 법을 당해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CISG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CISG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적용배제된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2나4819 판결¹³⁾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본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인데, 일본국 역시 CISG 체약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 하였으므로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체약국인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편 CISG 제6조는 당사자가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배제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에 CISG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여부에 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나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법에 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CISG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11) 이 점은 위의 판결들에서도 잘 명시되어 있다.

12) 그 1심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1566 판결이다.

13) 그 1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4446 판결이다.

묵시적으로 이 사건에 CISG 적용배제를 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ISG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결하였습니다.

Ⅲ. CISG가 한국 민법의 개정에 끼친 영향¹⁴⁾

1. 서설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50여년 동안 친족편과 상속편은 수차 개정되어 왔고, 특히 최근 2013년 7월 1일에는 성년후견제도도 도입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재산편은 별다른 개정이 없었습니다. 2004년 10월에 재산편의 개정을 담은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민법재산편의 조속한 개정필요성에 따라 2009년에 법무부 산하에 민법개정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그 결과로 법무부는 2013년 민법개정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이 개정시안 중에서 CISG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ISG는 대체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해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ISG만이 단독으로 그러한 개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고, 각각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 유럽계약법원칙(PECL)이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등의 국제적 규범도 함께 고려되었음은 물론입니다.

2.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끼친 영향

계약의 성립에 관한 주요개정내용으로 개정시안은 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고(개정시안 제527조), ② 청약의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던 현행민법 제527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승낙의 의사표시 발송 전에 청약의 철회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철회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으며(개정시안 제529조), ③ 현행민법 중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제529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제530조를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에 청약의 실효에 관한 개정시안 제530조를 신설하였으며, ④ 청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개정시안 제534조),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현행민법 제531조-제533조에 흠여

14) 이 부분은 권영준, 「2013년 민법개정시안해설 (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을 주로 참조하였다.

져 있던 내용을 모으면서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으로 개정시안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약의 철회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 - 개정시안 제529조

현 행	개정시안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신설>	<삭제> 제529조(청약의 철회) ① 청약의 철회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1.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였거나, 청약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청약이 철회되지 않으리라 믿고 행위한 경우

현행민법 제527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조문만 본다면 이는 청약의 철회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시안에서는 현행민법과 반대로 청약의 철회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서 청약의 철회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시안 제527조 제2항은 청약에 대한 승낙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i)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였거나 청약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와 (ii)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청약이 철회되지 않으리라 믿고 행위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CISG 제15조¹⁶⁾와 제16조¹⁷⁾를 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 이 개정시안 제530조에서는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제1항)을 두고, 이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의 성립과(제2항), 교차청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제3항)을 규정한다. 무엇보다도 개정시안 제530조 제1항에서는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한 현행민법 제531조나 이를 전제로 한 협행민법 제528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대화자나 격지자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계약성립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6) CISG 제15조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2) 청약의 실효 - 개정시안 제530조

현행	개정시안
<p>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제530조(청약의 실효) ① 청약은 그에 대한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② 청약은 청약자가 정한 기간 안에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p>

개정시안 제530조 제1항에서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민법에는 없는 규정이며 CISG 제17조¹⁸⁾를 계수한 것으로 보입니다.¹⁹⁾

17) CISG 제16조

-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18) CISG 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19) 그 밖에 개정시안 제530조 제2항에서는 승낙의 실효에 관하여,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실효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민법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의 규정을 개정시안 제530조 제2항으로 옮긴 것이다.

(3) 계약의 성립시기 - 개정시안 제534조

현 행	개정시안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삭제>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삭제>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된다.	<삭제>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4조(계약의 성립시기) ① 계약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③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현행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민법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에서는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약은 ...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여 제531조가 취한 발신주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제531조에 따르면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그것으로서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비록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에 따르면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설은 이른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시안에서는 현행 제531조를 삭제하고,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어 계약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도달주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기존에 제531조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을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도달주의를 취하는 CISG 제18조²⁰⁾ 및 제23조²¹⁾를 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²²⁾

20) CISG 제18조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3.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에 끼친 영향

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요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시안 제544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관하여 흩어져 있던 현행민법상의 여러 조항들(제544조, 제545조, 546조)을 하나의 조항으로 모으면서, 특히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개정시안 제544조에서는 계약해제에 채무불이행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시안 제544조에서는 채권자에게 주로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채무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으로, 개정시안 제544조에서는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 등 이행기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시안 제548조에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2항에서 계약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목적물이나 과실 등 원물반환이 곤란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과 해제 - 개정시안 제544조

현 행	개정시안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4조(채무불이행과 해제)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고를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를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를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CISG 제23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2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규정하는 현행민법 제532조와 제533조는 그 내용의 본질적 변경 없이 개정시안 제534조의 제2항과 제3항으로 이동되었다.

현 행	개정시안
<p>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요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 3.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체 후의 이행 또는 추완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때 <p>③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당사자 일방의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주로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에도 같다.</p>

중요한 개정으로, 개정시안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발생을 위하여 채무자(불이행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개정시안 제544조 제1항). 또한 개정시안에서는 이행거절(개정시안 제544조 제2항 제2호)이나 이행기전 해제(개정시안 제54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도 수용하고 있습니다.²³⁾

23)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계약해제요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에 채무가 여전히 불이행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개정시안 제544조 제2항), 이는 계약이 실효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계약의 존속과 원만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CISG는 본질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본질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최고를 한 후에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해제권행사요건을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이러한 이원적 규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제에 있어서 최고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시안에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 4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첫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채무의 이행을 다시 최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셋째,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이다. 채권의 목적이 이행기에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에게는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채권자에게도 가혹하다.

넷째, 지체 후의 이행 또는 추완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때에도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매수인이

첫째, 개정시안에서는 채무불이행을 계약해제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는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해제제도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제권발생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고, 단지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은 CISG 제49조와 제64조25)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정시안 제54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목적이 여전히 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아 계약관계를 무위로 돌리는 비효율적인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시안은 본질적(fundamental) 계약위반에 한하여 계약해제를 허용하는 CISG 제49조와 제64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CISG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개정시안은 여전히 현행민법에서 요구되는 이행최고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24) CISG 제49조

-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 (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 (가)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
 -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1)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 (2)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 (3)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25) CISG 제64조

-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셋째, 제3항에서는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의 경우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전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온 법리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기전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CISG 제7조²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해제의 효과 - 개정시안 제548조

현 행	개정시안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목적물 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수 없거나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민법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할 뿐이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정시안 제548조에서는 과실의 반환여부,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의 가액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상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정시안 제548조 제2항에서는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의 취지를 원물뿐만 아니라 과실에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CISG 제81조²⁷⁾ 와 제84조²⁸⁾의 영향을

26) CISG 제72조

-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7) CISG 제81조

-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또한 현행민법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시안 제548조 제3항에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목적물과 그 과실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²⁹⁾

IV. 전망에 갈음하여

흔히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수한 인적 자원은 풍부한 반면에 천연자원이 턱 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무역과 기술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역 외에 국제투자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기반한 물품무역이 여전히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 CISG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CISG의 성공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CISG의 체결국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특히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CISG에 많이 가입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대외물품무역에서 CISG가 적용되는 사례는 아마도 누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사실 CISG 가입 10년 만에 70건(1심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포함)이 넘는 법원판결이 나온 것도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가입 초기에는 CISG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 CISG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최소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틀림없이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선택과목의 하나로 국제거래법이 있고, 이 과목은 국제사

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8) CISG 제84조

- (1)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2)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평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29) 나아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개정시안 제548조 제3항 단서에서는 가액반환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원물반환불능의 경우에 반환채무자는 그 불능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이 반환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가액반환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고의나 과실로 원물의 반환을 불가능하게 한 자에게 그 원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과 CISG를 그 출제범위로 하고 있는데, 국제거래법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의 수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총 1,665명의 응시자 중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응시자가 413명으로 24.8%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총 응시자 2,704명 중에서 무려 2,561명(94.7%)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법조계에서 CISG를 학습한 법조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머지않아 우리 법조계에서 CISG는 보편적인 법률분야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고, 아울러 우리 법조계와 학계에서 CISG에 대한 연구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입법 측면에서도 CISG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그 영향이 계약의 성립이나 해제 부분에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CISG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국내 매매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CISG와 더욱 동화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CISG 적용에 관한 외국의 판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권장하자면, 실무상 당사자들은 준거법합의를 할 때 CISG와 연결하여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즉, CISG가 매매법률로서 충분히 자족적이긴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의 유효성 등 여러 사항들이 CISG의 적용범위 밖에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는 법률로서 국내법이 아니라 Unidroit 원칙을 지정,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제거래에서 실무가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며, 양당사자 중의 최소한 일방은 항상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비록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협상력에 달려있긴 하나,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CISG와 동조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계약법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중립적인 Unidroit원칙은 그러한 불행을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즉,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로 규율되는 사항으로 CISG의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Unidroit원칙이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ISG를 보충법으로 활용하면 계약의 중립성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권영준, 「2013년 민법개정시안해설 (채권편)」,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3.
-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CHECK-LIST에 관한 연구: 비엔나협약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Vol.20, 2003.
- 송수련, “CISG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례 연구”, 「중재연구」, Vol.23 No.4, 2013.
- 오세창, “CISG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Vol.26, 2005.
- 한재필, “CISG적용 국제물품매매에서 국내 강행법분쟁에 관한 연구 : 물품불일치 분쟁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Vol.19 No.1, 2009.
-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중재연구」 Vol.24 No.4, 2014.
-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2.

2.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가합7763, 2011가합1446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10가합67291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3940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156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4446 판결

3. 법규

민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ABSTRACT

South Korea's Ten-Year Experience with CISG and its Prospects

Won-Suk Oh

CISG provides a uniform framework for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n 2004 South Korea became the 63th State around world to adopt CISG. Starting next year CISG goes into effect as the law that governs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respect of which CISG displaces the existing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codes of Korea.

By its provision Article 1(a), CISG applies directly between Contracting States without referenc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South Korea's biggest trade partners including China, the U.S. and Japan are also parties to CISG, the number of such direct applications continuously increases. Now it is estimated, though roughly, that CISG governs about two-thirds of Korea's import and export trade of goods. The private survey of the author shows that up to now in South Korea there are 39 court cases decid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s, 29 cases by the appellate court and six cases by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nearly all these cases, CISG applied directly.

Furthermore, currently CISG is, in several respects, influencing upon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which is designed to modernize it: The revised draft published in 2013 adopts the rules on the revoc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s 15 and 16, the rule on the termin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 17 and the rule on the time that an acceptance takes its effect provided in article 18 of CISG. More important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taken by CISG, the revision draft no longer requires the existence of fault or negligence on behalf of the breaching party in order for the aggrieved party to void the contract, and the revised draft denies the right of avoidance for trivial, not fundamental, breaches of contract.

Key Words : Ten-Year Experience of CISG, CISG's Prospect, Korean Civil and Commercial Codes, Cases of Appellate & Supreme Court,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